

대통령령 제 호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7명”을 “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2개 금융회사”를 “금융회사”로, “임원 각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2조(감사인선임위원회 등) ①	제12조(감사인선임위원회 등) ①			
법 제10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	-----			
른 감사인선임위원회(이하 “감	-----			
사인선임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	-----			
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7명</u> 이상	----- <u>5명</u> -----			
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-----.			
②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(이	② -----			
하 이 조에서 “위원”이라 한다)	-----			
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-----.			
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	-----			
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	-----			
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	-----			
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	-----			
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·	-----			
회계·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	-----			
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	-----			
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	-----			
다.	-----.			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4. -----			
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	-----			
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	-----			
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	-----			
관한 법률」 제9조제17항제3	-----			

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하며, 직전 사업연도 말에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)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(기관투자자인 경우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) 2명. 다만,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(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)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주주는 제외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5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(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)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(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한국수출입은행

----- 1명. -----
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금융회사 -----

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을 포함한다)의 <u>임원 각 1명</u> ③ ~ ⑧ (생략)	----- ----- <u>임직원</u> -----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
연 락 처	(02) 2100 - 2692